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의회장

1. 제정이유

임실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임실군 출연 조건부 협약 보증에 대한 보증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특례보증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나.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라. 사후관리 및 지원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3. 참고자료

- 가. 관계근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의
-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9. 30. ~ 10. 20.)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비행정규제)
 - 3) 비용추계서 : 불입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입
 - 5) 관련법령 발췌문 : 불입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지원)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재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임실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5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6조(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2.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장비 및 비품 교체비
3. 그밖에 위와 유사한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7조(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지원대상자가 우선하여 연 1%대의 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최대 4%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이율이 연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율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추가 부담한다.

④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용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연체 등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이 증가할 때
5. 지원받은 사업자 또는 업체가 타지로 진출할 때
6.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할 때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 중소기업청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별표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10조 관련)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46102중 | 담배, 주류 중개업 |
| 46109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16중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39중 | 총포 도매업 |
| 46779중 | 화약, 폭약 도매업 |
| 47599중 | 총포 소매업 |
| 47841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47920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 47991 |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
| 47992 | 계약배달 판매업 |
| 47993 |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
| 47999 |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
| 561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임실군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
| 56120 | 기관 구내 식당업 |
| 56132 | 이동 음식업 |
| 5621 |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 911 중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 9122 |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
| 91249 | 도박 관련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기타 |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2(소상공인 육성시책)
-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담보 능력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에 따른 출연금과 신용보증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에 따른 출연금 발생
-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대출(2,000만원한도)에 대한 이차보전 비용 발생

나. 추계 결과

- 사업대상 : 영세 소상공인
-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25명지원기준) : 50,000천원
- 신용보증 대출(2,0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 비용(4%이내) : 20,0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불 임

3. 재원조달방안

- 2015년 본예산(수정예산) : 70,000천원 편성 요구됨
- 출연금 50,000천원, 이차보전 지원 20,000천원

4. 작성자 : 지역경제과장 강두천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015년) | 2차년도 (2016년) | 3차년도 (2017년) | 4차년도 (2018년) | 5차년도 (2019년) | 계 |
|-------------------------|-------|-----------------|-----------------|-----------------|-----------------|-----------------|---------|
| 세 출 | | 7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630,000 |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 | | 5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450,000 |
|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지원 | | 2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180,000 |
| 재원 조달 | | 7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630,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7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630,000 |
| | 보조금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군비 | 7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630,000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 |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지방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비고 | | 25명지원 | 50명 지원 | 50명 지원 | 50명 지원 | 50명 지원 |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 | | | |
|---|--|----------|----------------------|
| 관리번호 | 2014A전북임실046 | | |
| 정책명 |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북도 임실군 | |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
| | 담당자명 | 이자운 | 전화번호 063-640-2405 |
|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 | | |
|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할수록 여성들의 혜택은 줄어들 수 있음.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원 조건이 안되는 경우라도 예외 상황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 |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지역경제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입법 취지는 5등급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자가 여성이라 할지라도 신용등급에 관한 기준은 완화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별을 고려한 성인지적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
| <p>2014년 10월 30일</p> <p>지역경제과장</p> <p>분석평가책임관 귀하</p> | |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10조의 2(소상공인육성 시책)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및 경영 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